

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이 경 속

한신대학교

박 진 아[†]

세원영유아아동상담센터

신 의 진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전국의 모 51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의심이 된 적이 있는 모는 76명(14.6%), 다른 영유아가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의심이 된 적이 있는 모는 92명(17.7%)이었다. 대처방안으로는 '해당 보육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했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아동학대 목격 후 무조치 이유로는 자녀의 경우, '내 자녀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유아의 경우,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직무스트레스, 보육교사 성격적 문제, 보육교사 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도는 '교사자격 취소', 피해 영유아 및 부모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도는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에서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진단'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상담만족도는 11명(47.8%)이 '보통이다'로 응답하였다. 다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모 중 470명(90.6%)이 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의사 결정 및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설치 장소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을 요구하였다. 여섯째, 모 중 498명(94.2%)이 '영유아 놀이심리치료, 부모 및 보육교사 상담'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격요건으로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경력,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모의 요구도

* 본 연구는 2013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연구과제(연구책임자 한신대 이경속 교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박진아, 세원영유아아동상담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93

E-mail : pjinah1230@hanmail.net

201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0-2세 영아 중 874,975명(63.3%),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연령인 3-5세 유아 중 602,821명(43.4%)이 평균 7.4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만중, 2015), 2014년 12월 기준으로는 전국 43,380개 어린이집 내원 영유아 원아 수가 1,478,879명에 이르고 있다(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5.2.11.). 누리과정이란 2012년부터 국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실행하고 있는 '무상보육' 사업으로서, 보육·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며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누리과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와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위기감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최근 5년 사이 국내 어린이집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도 총 212,332명으로 증가(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5.2.11.)하였고, 영유아 중 과반 수 이상이 하루 중 많은 양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대다수의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련 요인, 그 중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보육교사의 역량이 어떠한지와 관련되어 있다. 어린이집 내원 연령인 0-5세 영유아의 경우 환경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언어적 보고에 제한점이 있는 발달

적 특성 상, 보육교사의 교육과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영유아와 하루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상호작용하고, 영유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 2의 어머니로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저지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3세 여아를 때려서 여아가 넘어지는 CCTV 영상이 공개되었고(SBS 뉴스, 2015. 1.13.), 수원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26개월 된 남아의 팔을 물어 상처를 냈으며(조선일보, 2015.1.30.), 남양주지역 보육교사는 3명 영유아의 팔과 다리를 바늘로 찔러 상처를 내는(동아일보, 2015.2.6.) 등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보육교사의 보육행동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동학대 보고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보육교사 아동학대는 교사의 교육수준과 질이 높다고 알려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만 1세 유아의 머리를 각티슈로 수차례 내리치고, 아이가 밑에 깔 이불을 잡아당겨 유아를 이불에 쌓인 채 바닥에 구르도록 만들기도 하는 등 학대를 한 장면이 CCTV에 찍혀 부모들이 학대신고를 한 사례도 발생하였다(MBC 시사매거진 2580, 2013. 9. 8). 언론 보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매년 어린이집에서만 평균 10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되었으며, 전국 아동학대 사례 중 3.4%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미국의 경우 영유아 보육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이 0.4%로 보고되었던 점(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2)에 비교한다면 국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보육교사 아동학대 문제가 해당 영유아와 그들 부모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더욱이 여성의 사회적 참여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을 고려할 때 무상보육과 관련된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주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경력단절 방지 및 출산장려정책 마련 측면에서 볼 때,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모로 하여금 자녀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겨서 양육지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첫째 자녀 이후 모의 후속 출산의 지를 격감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

아동학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비롯한 영유아의 전반적 정신건강과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관계, 그리고 이후 영유아가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대를 당한 영유아는 이후 낮은 자존감, 분노 및 공격성, 행동문제, 학습장애, 가출, 높은 자살률, 범죄행위 연루 비율,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 성적문란행동, 신체질병 등 다양한 병리적 문제를 보이게 된다(김세진, 김교현, 2005;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이상규, 이민규, 2007; 이경숙, 박진아, 오은정, 2008; Nanni, Usher, Danese, 2012; Rich-Edwards, Spiegelman, Lividoti, et. al., 2010; Surtees, Wainwright, Pooley, et. al., 201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08). 영유아들이 하루 8-24 시간 동안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며 제 2의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후 영유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교육기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예상된다. 실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해당 학급 5세 유아 16명을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11명(69%)의 유아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되었으며, 수면장애·불안·우울 등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BS 뉴스, 2015.3.14.).

그러나 미국과 비교해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피해 영유아의 아동학대 후유증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경험적 연구가 부재할 뿐 아니라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전문적 상담개입 서비스 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선별기준 및 선별도구(Korfmacher, 2000), 학대 발생 원인 및 대처요령과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으며(Saperia, Lakhanpaul, Kemp, et. al., 2009), 특히 보육기관 종사자를 위한 매뉴얼

도 제작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08). 반면에 국내의 경우 보육교사 아동학대는 전국 5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사례판정 및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내 학대를 비롯한 모든 아동학대 관련 사례를 다루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전문 인력이 국내 전체 인구 4800만 명에 383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베이비뉴스, 2013. 11.25). 그러므로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달적으로 성인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를 심층적으로 심리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 내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다른 목격 영유아 또래를 모두 인터뷰하여 최종적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판정을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우 아동학대에 연루된 영유아, 보육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1-5세 영유아 대상 학대가 95.6%에 달한 반면, 보육교사에 대한 최종조치는 지속관찰(45.5%)과 고소, 고발(46%)이 대부분(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이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게 된 원인에 대한 파악 및 보육교사와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 심리검사나 심리치료를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로 2015년 1월에 보고된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가해 보육교사의 경우, 국내 최초로 아동학대의 죄질이 높다는 판단 하에 구속수사를 받으며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검사나 심리치료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학대사례판정 이후 가해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 인건비, 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5.4.). 전국 4만 3천여 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아동학대 전수조사(노컷뉴스, 2015.3.2.),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제로 인증사업(내외뉴스, 2015.3.17.) 및 보육교사 업무 및 처우개선을 통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 해결 후속 조치(소비자경제신문, 2015.3.18.) 등 보육교사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및 도시별로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사, 학부모 및 전문가들이 개최하는 심포지엄과 간담회 및 부모 모니터링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13년 5월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 장면이 CCTV 장면이 공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인천에서는 2015년 후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12,076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인천시청, 2015.3.11.).

그러나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처벌 및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학대 근절을 위

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부모의 93.7%가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뉴스에듀, 2015.3.26.)에도 불구하고, 정작 직접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모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본 국내 경험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자가 논문검색 기관인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를 통해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논문을 검색해보았더니 총 7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6개 논문은 모두 보육교사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행동 관련 연구로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이경숙, 박진아, 최명희(2015)가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중 17.9%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나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가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들 스스로 아동학대가 직무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담 상담 기관 및 전문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내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는 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국가가 제공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규모로 모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육

교사 아동학대 관련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모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보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활동지원, 경력단절 방지 및 후속 출산의지 증가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역량 강화 측면에서 국내 최초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모 519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및 상담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모가 경험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 경험 및 만족도,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담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보육교사와 부모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적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및 목격 여부, 모의 취업유무 및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경험 및 목격 여부의 차이, 아동학대 목격시 대처방안, 목격 후 무조치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모의 아동학대 신고의 무제도 인지 여부 및 알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셋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넷째, 모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시 가해 보육교사, 피해 영유

아 및 부모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섯째, 모가 경험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 및 상담 만족도는 어떠했는가, 여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신설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는 무엇인가, 일곱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 필요성 및 자격기준에 대한 요구도는 무엇인가, 여덟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표집을 위하여 전국 76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연구협조가 가능한 총 13개 센터(이천시, 고양시, 창원시, 포항시, 울산시, 성남시, 화성시,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노원구)를 모집한 후, 각 센터별로 50-1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를 배부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모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모는 질문지를 작성한 후 미리 제공된 봉투에 밀봉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총 800부가 배포된 후 569부(75.9%)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19부를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는 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

대 경험, 인식,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담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적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진(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증 보유)이 질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질문지 구성을 위하여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중 보육교사 51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 및 관련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본 이경숙, 박진아, 최명희(2015)의 연구결과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질적분석을 실시한 박진아, 이경숙(2015)의 연구결과를 참조로 하여 질문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진이 서울 소재 영유아아동상담센터에 의뢰되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영유아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 및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상담치료를 제공했었던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험, 인식 및 아동학대 관련 상담 서비스 요구도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크게 인구학적 배경, 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행동 유형 및 심각도에 대한 인식(예; 손 또는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때린 경우는 어느 정도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는가? 등),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견 시 모의 대처방안 및 원인(예; 아동학대 목격 시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등), 모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인지 여부 및 알게 된 경위,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예;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표 1. 모의 인구학적 특성 (N=519)

배경변인	구분	N	%	
연령	20-29세	35	6.7	
	30-39세	406	78.2	
	40-49세	69	13.3	
	50-59세	7	1.3	
결혼 여부	기혼	508	97.9	
	미혼	7	1.3	
	이혼 및 사별	4	0.4	
최종 학력	아버지	초등학교 졸업	2	0.4
		고등학교 졸업	37	7.1
		전문대학 졸업	306	59.0
		4년제 대학교 졸업	128	24.7
	대학원 이상	46	8.9	
	어머니	중학교 졸업	3	0.6
		고등학교 졸업	59	11.4
		전문대학 졸업	173	33.3
		4년제 대학교 졸업	215	41.4
		대학원 이상	69	13.3
직업	아버지	기술직	49	9.4
		상업	10	1.9
		사무직	76	14.6
		전문직	325	62.6
		판매직	4	0.8
		서비스직	13	2.5
	어머니	단순노무직	2	0.6
		관리직	18	3.5
		기술직	4	0.8
		상업	8	1.5
		사무직	82	15.8
		전문직	83	16.0
		주부	282	54.3
		판매직	3	0.6
		서비스직	26	5.0
		단순노무직	1	0.2
관리직	10	1.9		
모의 취업유무	맞벌이	253	48.7	
	전업주부	257	49.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66	51.3	
	법인	9	1.7	
	민간	99	19.1	
	가정	68	12.9	
자녀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직장	56	10.8	
	1-5시간	55	10.6	
	6-10시간	454	87.5	
	11-15시간	6	1.2	
월소득 수준	16-20시간	4	0.8	
	100-200만원 미만	35	6.7	
	200-300만원 미만	89	17.1	
	300-400만원 미만	130	25.0	
	400-500만원 미만	101	19.5	
	500-600만원 미만	77	14.8	
	600-700만원 미만	35	6.7	
700만원 이상	52	10.0		

시 가해 보육교사, 피해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요구도,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 경험 및 만족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신설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 필요성 및 자격기준에 대한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요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응답은 문항 유형에 따라 중복응답 및 1, 2, 3 순위를 정하는 다중응답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질문은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경험 및 의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구체적 사건을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주관식 질문(예; 만약 자신의 자녀나 다른 영유아가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자녀의 아동학대 판정 과정 및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질문지는 서울 소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이자 유아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보육전문가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질문은 수정을 한 후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여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배경특성,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목격 유무, 모의 취업 유무 및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 및 의심 여부 차이,

아동학대 목격 시 모의 대처방안,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 모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 인지 여부 및 알게 된 경우,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 경험 및 만족도,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신설 및 전문상담요원 필요에 대한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의 후속조치 요구도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 분석,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행동에 대한 인식

모가 보육교사의 보육행동 중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보육행동 총 14문항을 제시하고, 그 중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가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보육행동은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496명, 98.4%), 다음으로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또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493명, 97.85),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492명, 97.6%), ‘도구(장난감, 식판, 막대기 등)를 이용해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488명, 96.8%),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488명, 96.8%),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486명, 96.4%),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표 2.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행동에 대한 인식 (중복응답) (N=519)

	내용	N	%
1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478	94.8
2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384	76.2
3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393	78.0
4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427	84.7
5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	346	68.7
6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402	79.8
7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301	59.7
8	영유아의 머리카락이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미는 행동	437	86.7
9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496	98.4
10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486	96.4
11	도구(장난감, 식판, 막대기 등)를 이용해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488	96.8
12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488	96.8
13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492	97.6
14	교사가 영유아에게 또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493	97.8

것'(478명, 94.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346명, 68.7%),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301명, 59.7%)은 낮게 나타났다.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경험 및 대처방안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험 및 의심 여부 실태

모가 보육교사에 의해 자신의 자녀나 다른 영유아가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아동학대를 당한다고 의심할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자신의 자녀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모의 경우는 총 40명(7.7%), 아동학

표 3.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험 및 의심 여부 (N=519)

내용	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N(%)		다른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N(%)	
	경험	의심	목적	의심
있음	40(7.7%)	36(6.9%)	37(7.1%)	55(10.6%)
없음	476(92.3%)	483(93.1%)	482(92.9%)	464(89.4%)

대를 의심한 적이 있는 경우는 36명(6.9%)로 나타났으며, 다른 영유아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모의 경우는 총 37명(7.1%), 아동학대를 의심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 55명(10.6%)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유무 및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 및 의심 여부 차이

모의 취업유무 및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자신의 자녀 혹은 다른 영유아의 아동학대 경험 및 의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신의 자녀 혹은 다른 영유아의 아동학대 경험 및 의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의심이 들었던 경험에는

차이가 있었는데($X^2=15.82, p<.001$) 국공립 어린이집(36.7%)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35%), 법인 및 직장어린이집(28.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모의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 목격 경험 및 의심 여부에 차이가 있었는데($X^2=8.50, p<.05$),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4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36.5%), 법인 및 직장어린이집(19.0%)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목격 후 대처방안

모가 보육교사 아동학대 목격 후 사용한 대처방안은 무엇이었는지를 자신의 자녀와 다른 영유아 유형별로 각각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자신의 자녀의 경우

표 4.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 및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 경험 및 의심 여부 차이 (N=519)

		취업모 N(%)	전업주부 N(%)	X ²
내 자녀 아동학대	있음	26(40.0)	32.8(60.0)	2.75
	없음	227(51.0)	218(49.0)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	있음	27(41.5)	38(58.5%)	1.94
	없음	226(50.8)	219(49.2)	

표 5.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자녀 및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 경험 및 의심 여부 차이 (N=519)

		국공립어린이집 N(%)	법인/직장어린이집 N(%)	민간/가정어린이집 N(%)	X ²
내 자녀 아동학대	있음	22(36.7)	17(28.3)	21(35.0)	15.82***
	없음	244(55.8)	48(11.0)	145(33.2)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	있음	23(36.5)	12(19.0)	28(44.4)	8.50*
	없음	243(56.0)	53(12.2)	138(31.8)	

*** $p<.001$, * $p<.05$

표 6.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목격 후 대처방안 (중복응답) (N=519)

내용	N(%)			
	내 자녀 아동학대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4	16.3	24	26.1
아동상담기관이나 아동학대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다	28	32.6	27	29.3
해당 보육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했다	51	59.3	35	38.0
전문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조치를 취했다	8	9.3	7	7.6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18	20.9	13	14.1
온라인, 언론기관 등에 공개적으로 알렸다	12	14.0	11	12.0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고 다른 기관으로 옮겼다	41	47.7	17	18.5

‘해당 보육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했다’(51명, 59.3%),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고 다른 기관으로 옮겼다’(41명, 47.7%), ‘아동상담기관이나 아동학대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다’(28명, 32.6%) 순으로,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의 경우 ‘해당 보육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했다’(35명, 38.0%), ‘아동상담기관이나 아동학대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다’(27명, 29.3%),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24명, 26.1%)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목격 후 무조치 이유

모가 보육교사 아동학대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자녀와 다른 영유아 유형별로 각각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자녀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목격시 무조치 이유. 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목격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내 자녀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29.8%), 2순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20.24%), 3순위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1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조치 이유. 모가 다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목격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24.3%), 2순위 ‘해당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19.6%), 3순위 ‘신고로 인한 신분노출, 보복, 비난, 불이익 등이 두려워서’(1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자신의 자녀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목격시 무조치 이유 (다중응답) (N=519)

내용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3(21.4)	3(21.4)	2(14.3)	17	2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1(7.1)	2(14.3)	2(14.3)	9	3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0(0.0)	1(7.1)	1(7.1)	3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1(7.1)	0(0.0)	2(14.3)	5	
내 자녀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35.7)	1(7.1)	3(21.4)	25	1
신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0(0.0)	1(7.1)	1(7.1)	3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7.1)	0(0.0)	1(7.1)	4	
신고로 인한 신분노출, 보복, 비난, 불이익 등이 두려워서	0(0.0)	4(28.6)	1(7.1)	9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0(0.0)	0(0.0)	1(7.1)	1	
아동학대라고 확신할 수 없어서(예; 일회성 목격 등)	2(14.3)	1(7.1)	0(0.0)	8	

*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8. 다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목격시 무조치 이유 (다중응답) (N=519)

내용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9(37.5)	4(16.7)	1(4.2)	36	1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0(0)	3(12.5)	3(12.5)	9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4.2)	3(12.5)	5(20.8)	14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0(0)	0(0)	3(12.5)	3	
해당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6(25.0)	3(12.5)	5(20.8)	29	2
내 자녀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8.3)	3(12.5)	1(4.2)	13	
신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0(0)	0(0)	0(0)	0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2(8.3)	0(0)	4(16.7)	10	
신고로 인한 신분노출, 보복, 비난, 불이익 등이 두려워서	2(8.3)	3(12.5)	3(12.5)	15	3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1(4.2)	0(0)	2(8.3)	5	
아동학대라고 확신할 수 없어서(예; 일회성 목격 등)	1(4.2)	5(20.8)	1(4.2)	14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모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알게 된 경위

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알게 된 경위를 살펴본 결과(표 9), 모 중 354명(68.2%)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를 모르고 있었으며, 알게 된 경우는 대부분 TV등 매스컴(96명, 58.25)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모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직무스트레스'(366명, 70.5%)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성격적 문제'(317명, 61.1%), '보육교사의 현재 정신건강 문제'(308명, 5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모의 후속조치 요구도

가해 보육교사 대상 후속조치 요구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었

표 10.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중복응답) (N= 519)

발생 원인	N	%
과다한 업무	216	41.6
직무스트레스	366	70.5
열악한 근무환경	301	58.0
보육교사의 교육수준	147	28.3
보육교사의 성격적 문제	317	61.1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문제	308	59.3
교사들 간의 갈등	80	15.4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부족	176	33.9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245	47.2

을 경우, 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후속조치(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해 보육교사에 필요한 후속조치로 1순위 '교사자격 취소'(34.5%), 2순위 '교사자격 정지'(27.15), 3순위 '가해교사 명단 공개'(1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후속조치 요구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었을 경우, 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피해 영

표 9. 모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알게 된 경위 (N= 519)

인지 여부	N	%	알게 된 경위	N	%
알고 있음	165	31.8	TV등 매스컴	96	58.2
			인터넷	19	11.5
모르고 있음	354	68.2	교육 및 세미나	36	21.8
			주변사람들을 통해	11	6.7

표 11. 모의 가해 보육교사 대상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도 (다중응답) (N=519)

가해 보육교사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교사자격 정지	142(27.4)	161(31.0)	90(17.3)	838	2
교사자격 취소	270(52.0)	110(21.2)	40(7.7)	1070	1
급여 감봉	10(1.9)	29(5.6)	76(14.6)	164	
전문상담 후 복귀	35(6.7)	43(8.3)	69(13.3)	260	
전문상담 받으며 근무	12(2.3)	18(3.5)	44(8.5)	116	
해당기관 지원 감축	7(1.3)	28(5.4)	86(16.6)	163	
가해 보육교사 명단 공개	42(8.1)	129(24.9)	103(19.8)	487	3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12. 모의 피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후속조치 요구도 (다중응답) (N=519)

피해 영유아 및 부모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실시	194(37.4)	143(27.6)	81(15.6)	949	1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치료 제공	149(28.7)	176(33.9)	89(17.1)	888	2
피해 영유아 부모면담 및 상담	95(18.3)	102(19.7)	200(38.5)	689	3
가해 보육교사, 학급 및 어린이집 변경	41(7.9)	26(5.0)	45(8.7)	220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부모상담	8(1.5)	16(3.1)	36(6.9)	92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유아 및 부모에 대한 후속조치(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후속조치로 1순위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실시’(33.4%), 2순위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치료 제공’(31.3%), 3순위 ‘피해 영유아 부모면담 및 상담’(2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의 자녀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 경험 및 상담 만족도

모가 자녀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 내용, 상담 받은 장소 및 만족도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자녀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6명, 26.15)에서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진단’(12명, 52.2%)을 가장 많

표 13.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상담 내용, 상담 장소 및 상담 만족도 (N= 519)

상담 내용	N	%	상담 장소	N	%	상담 만족도	N	%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진단	12	52.2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영유아 전문상담실	4	17.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0	0.0
영유아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5	21.7	정신건강증진센터	5	21.7	도움이 되지 않았음	2	8.7
부모 정신건강 관련 상담	1	4.3	사설 상담기관	5	21.7	보통	11	47.8
경찰이나 법률기관 상담	0	0.0	해당 어린이집(방문지원)	5	21.7	도움이 되었음	6	26.1
원장 및 보육교사와 면담	3	13.0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	6	26.1	매우 도움이 되었음	4	17.4
소아정신과 전문의 상담	2	8.7	온라인 상담	2	8.7	도움이 되었음		

이 받았으며, 상담 만족도는 부모 중 10명 (43.5%)이 ‘도움이 되었음 이상’, 부모 중 11명 (47.8%)은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모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전문 상담 기관 설치

장소에 대한 요구도, 전문 상담 기관이 모의 아동학대 신고의사 결정 및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 그리고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전문상담요원의 역할 및 자격기준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본다.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상담 기관. 모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보육교사가

표 14. 가해 보육교사 대상 상담 기관에 대한 모의 인식 (다중응답) (N=519)

상담 기관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	215(41.4)	119(22.9)	89(17.1)	972	1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90(17.3)	184(35.5)	132(25.4)	770	2
사설 상담기관	34(6.6)	80(15.4)	148(28.5)	410	
해당 어린이집(방문지원)	50(9.6)	21(4.0)	45(8.7)	237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	127(24.5)	114(22.0)	105(20.2)	714	3
온라인 상담	3(0.6)	1(0.2)	0(0.0)	11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31.2%), 2순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24.7%), 3순위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2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 영유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기관. 모든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영유아 및 부모가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33.8%), 2순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22.4%), 3순위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1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사용의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모가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전체 모 중 470명(90.6%)이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효율성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모의 의사결정,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16).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응답한 모는 302명(58.2%),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모는 391명(75.3%)으로 나타났다.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설치 장소에 대한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은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다(표 17).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40.0%), 2순위 '해당 어린이집(방문 지원)'(18.5%), 3순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18.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영유아 발달상담전문요원)¹⁾에 대한 모의 인식 및 요구도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모의 인식. 모든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489명(94.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역할에 대한 모의 인식.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8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영유아 놀이심리치료, 부모 및 보육교사 상담'(36.3%),

1)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내원 연령인 0-5세 영유아의 심층적 심리평가 및 놀이심리치료, 부모 및 보육교사 상담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과 받은 것으로 검증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을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가칭)으로 정의하고자 함.

표 15. 피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상담 기관에 대한 모의 인식 (다중응답) (N=519)

상담 기관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	246(47.4)	112(21.6)	85(16.4)	1047	1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51(9.8)	197(38.0)	146(28.1)	693	2
사설 상담기관	43(8.3)	83(16.0)	130(25.0)	425	
해당 어린이집(방문지원)	67(12.9)	39(7.5)	52(10.0)	331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	103(19.8)	79(15.2)	91(17.5)	558	3
온라인 상담	5(1.0)	9(1.7)	13(2.5)	46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16.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효율성에 대한 인식 (N=519)

모의 아동학대 신고 의사결정에 도움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에 도움		
정도	N	%	정도	N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	0.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5	8.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2	2.3
보통이다	163	31.4	보통이다	108	20.8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29	5.6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78	15.0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73	52.6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313	60.3

표 17.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설치 장소에 대한 요구도 (다중응답) (N=519)

내용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	301(58.0)	128(24.7)	52(10.0)	1211	1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39(7.5)	154(29.7)	132(25.4)	557	3
사설 상담기관	26(5.0)	50(9.6)	128(24.7)	228	
해당 어린이집(방문지원)	98(18.9)	100(19.3)	66(12.7)	560	2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	28(5.4)	50(9.6)	98(18.9)	282	
온라인 상담	25(4.8)	36(6.9)	41(7.9)	188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18.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역할에 대한 모의 인식 (다중응답) (N=519)

주요 역할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	164(31.6)	142(27.4)	106(20.4)	882	2
영유아 놀이심리치료, 부모 및 보육교사 상담	211(40.7)	213(41.0)	66(12.7)	1125	1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104(20.0)	95(18.3)	193(37.2)	695	3
아동학대 전수조사 및 보고서 작성	17(3.3)	14(2.7)	35(6.7)	114	
전문기관과의 연계	13(2.5)	25(4.8)	69(13.3)	158	
어린이집 방문지원, 온라인 상담	8(1.5)	30(5.8)	45(8.7)	129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2순위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28.4%), 3순위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2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자격에 대한 모의 요구도.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자격에 대한 모의 요구도(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 여부)를 아동학대 관련 상담, 아동학대 관련 심리평가 및 진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각 영역별로 살펴보았다(표 19).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의 경우, 학력은 대졸(247명, 51%), 심리학 전공(342명, 70.7%), 경력 3-5년(229명, 47.3%)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심리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의 경우, 학력은 대졸(238명, 49.5%), 심리학 전공(364명, 75.7%), 경력 3-5년(205명, 42.6%)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의 경우, 학력은 대졸(254명,

54.2%), 아동학 전공(213명, 45.4%), 경력 3-5년(208명, 44.3%)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의 경우, 학력은 대졸(237명, 49.8%), 아동학 전공(319명, 67%), 경력 3-5년(194명, 40.8%)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요구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모의 요구도(1순위, 2순위, 3순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0에 제시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1순위 ‘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21.9%), 2순위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20.2%), 3순위 ‘학대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강화’(1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자격에 대한 모의 요구도 (N=519)

	내용	아동학대 관련 상담		아동학대 관련 심리평가 및 진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관정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N	%	N	%	N	%	N	%
학력	고졸	24	5.0	33	6.9	40	8.5	27	5.7
	전문대졸	99	20.5	83	17.3	118	25.2	91	19.1
	대졸	247	51.0	238	49.5	254	54.2	237	49.8
	대학원졸	114	23.6	127	26.4	57	12.2	121	25.4
전공 (중복응답)	심리학	342	70.7	364	75.7	170	36.2	273	57.4
	아동학	286	59.1	213	44.3	213	45.4	319	67.0
	사회복지	55	11.4	52	10.8	192	40.9	116	24.4
	법률	23	4.8	31	6.4	101	21.5	39	8.2
	정신의학	90	18.6	160	33.3	80	17.1	133	27.9
	공무원	4	0.8	5	1.0	78	16.6	7	1.5
경력	3년 이하	49	10.1	39	8.1	80	17.1	54	11.3
	3~5년	229	47.3	205	42.6	208	44.3	194	40.8
	5~7년	144	29.8	169	35.1	127	27.1	130	27.3
	7년 이상	62	12.8	68	14.1	54	11.5	98	20.6
자격증 여부	예	465	96.1	456	94.8	387	82.5	429	90.1
	아니오	19	3.9	25	5.2	82	17.5	47	9.9

표 20. 모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 요구도(다중응답) (N=519)

내용	N(%)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순위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	149(28.7)	64(12.3)	55(10.6)	630	2
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23(4.4)	74(14.3)	44(8.5)	261	
어린이집 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	172(33.1)	60(11.6)	47(9.1)	683	1
신고의무제 강화	13(2.5)	41(7.9)	59(11.4)	180	
학대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60(11.6)	98(18.9)	96(18.5)	472	3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6(1.2)	30(5.8)	46(8.9)	124	
학대 가해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15(2.9)	47(9.1)	62(11.9)	201	
영유아 정서 및 행동문제 예방적 평가 및 상담	26(5.0)	41(7.9)	43(8.3)	203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55(10.6)	64(12.3)	67(12.9)	360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전국 모 519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 경험 및 만족도,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담 요구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보육행동 중 아동학대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는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슷한 ‘도구(장난감, 식판, 막대기 등)를 이용해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등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행동을 대체적으로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또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등 성적 행동을 심각한 학대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주지 않은 행동’,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의도적을 못하게 하는 행동’ 등 정서적 학대 행동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경우 보육교사의 보육행동 중 신체체벌이나 성적 행동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며 영유아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식한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에게 의한 학대 사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중복학대 비율이 가장 높

으며(34.3%)(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중복학대를 당한 아동의 정신건강 예후가 더 좋지 않았다(이경숙, 박진아, 오은정, 2008)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모를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정서적 학대나 중복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40명, 7.7%), 의심을 해본 적이 있는(36명, 6.9%) 모가 총 76명(14.6%), 그리고 다른 영유아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37명, 7.1%), 의심을 해본 적이 있는(55명, 10.6%) 모는 총 92명(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고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비율인 3.4%를 크게 웃도는 결과로 공적기관에 아동학대 사례로 신고 되는 것보다 실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모가 경험하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율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의심이 들었던 경험은 국공립 어린이집(36.7%),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 목격 및 의심 경험은 민간/가정어린이집(44.4%)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점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 모두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나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율에 비해 실제 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아동학대 발생율이 훨씬 높음을 시사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가 자신의 자녀나 다른 영유아가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당할 때, 모두 '해당 보육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했다'는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반면에 자녀 아동학대의 경우 '내 자녀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유아 아동학대의 경우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는 자녀의 아동학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고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대처방안(2순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는 보육교사 아동학대를 목격하더라도 해당 보육교사나 원장에게 항의하는 개인적 대처나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하며, 내 자녀에게 피해가 가거나 아동학대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모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관련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모 중 354명(68.2%)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모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성격적 문제', '보육교사의 현재 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보육교사의 '과다한 업무'나 '열악한 근무환경'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숙, 박진아, 최명희(2015)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

생 원인으로 '과다한 보육업무'를 높게 응답했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최근 보육교사들이 평균 10시간 가까이 평균 6.3명의 영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프레시안 뉴스, 2015.3.11.) 뿐 아니라 업무일지 작성을 비롯한 평균 150가지의 직무(프레시안 뉴스, 2015.3.19.)를 과다하게 담당하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과 심각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권혜진, 2008; 이무영, 박상희, 문수경, 2008), 이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신혜영, 이은혜, 2005; 정명선, 2014; 한세영, 김영희, 김연화, 2007; 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2), 부정적 훈육행동(이희은, 김순호, 김현익, 우연희, 문수백, 2013)을 비롯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다(동아일보, 2013.6.12.)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보육교사는 과다한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모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개인의 성격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실제로 최근 보육교사 학대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보육행동(예;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3세 여아를 때려서 여아가 넘어지고, 26개월 된 남아의 팔을 물어 상처를 내며, 영유아의 팔과 다리를 바늘로 찔러 상처를 내는 행동 등)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도 보육교사가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영유아에게 저지르게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직업이며(한국능력개발원, 2013),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 특성 분석 결과에서 '사회, 경제적 스

트레스 및 고립'(16.0%), '성격 및 기질문제'(9.2%)이 높게 나타났던 점(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을 고려한다면,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아동학대 가해 보육교사를 비롯하여 언론에 보도된 가해 보육교사들이 본인의 아동학대 행동을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보인 보육행동이었다고 주장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양성 및 교육과정에서부터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시에도 인성을 검증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정책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할 것',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성교육 명기' 등 보육교사 인성교육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발의안(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 2015.2.11.)의 법제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필요한 후속조치로 가해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격 취소', '교사 자격 정지', '가해 보육교사 명단 공개' 순으로, 피해 영유아 및 부모의 경우에는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치료 제공', '피해 영유아 부모면담 및 상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더 이

상 보육을 담당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피해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정신병리 관련 심리지원을 시급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천 연수구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가해 교사가 국내 최초로 아동학대로 인한 구속수사를 받으며 재판 중인 실정을 고려한다면, 추후 아동학대 가해 보육교사 처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현실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직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응급영유아위기심리지원 제도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 영유아 행동특성 중 '특성 없음'(62.6%)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난 점(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을 고려한다면,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직후 어린이집 현장조사 과정에 0-5세 영유아의 발달 및 발달정신병리에 대해 전문적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영유아발달상담 전문요원이 투입되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평가 실시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가 '피해 영유아 부모면담 및 상담'을 후속조치로 높게 요구하였던 결과를 고려한다면, 영유아 뿐 아니라 피해 영유아 부모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참고로 본 연구진은 현재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SBS 뉴스, 2015. 1.13)에 응급영유아위기심리지원팀 소속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자격으로 피해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심리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 영유아를 위한 놀이심리 치료,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을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모가 요구한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영유아 위기심리지원의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다섯째, 모는 자녀에 대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에서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진단’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상담만족도는 모 중 11명(47.8%)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시 모가 개인적으로 자녀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으로 내원해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의 상담만족도가 보통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모는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 및 수사 진행 과정, 피해 영유아 자녀가 보이는 다양한 정서 및 행동적 문제, 급격한 주변 환경 및 생활 패턴의 변화, 가해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갈등, 주변의 시선 및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모의 죄책감과 관련된 우울감 및 분노, 부부갈등 등 심각한 수준의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사건 피해 영유아 16명의 부모들이 모두 심각한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BS 뉴스, 2015.3.14.).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모가 개별적으로 주변의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을 검색하여 찾아보고, 영유아 자녀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심리평가 및 진단, 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경우 모의 심리적 부담감이 증폭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로 신설된다면 모 중 470명(90.6%)가 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 신설,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활발한 정책적 논의 및 토론이 요구된다.

여섯째, 모 중 489명(94.2%)이 ‘영유아 놀이심리치료, 부모 및 보육교사 상담’(36.3%) 역할을 담당할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을 위한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며, 자격요건으로는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경력,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을 내원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가해 보육교사, 피해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평가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례 판정을 해준 후, 신속하게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및 임상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인력을 양성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 ‘학대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강화’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최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및 사회 각층에서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연합뉴스, 2015.3.31.). 부모 중 93.7%가 어린이집 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고 있음(뉴스에듀, 2015.3.26.)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약 800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CCTV 설치비용,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인권문제(프레시안 뉴스, 2015.2.24.) 등으로 인해 CCTV 설치 의무화 안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보육교사, 영유아 및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연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및 실효성, 또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은 없는지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와 더불어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의 자기보고식 질문지 응답을 토대로 분석한 양적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보육교사 아동학대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효율성 있는 정책적 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실제로 자녀가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를 대상으로 심층적 질적면담을 통해 보육교사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으며, 필요한 조치 및 상담 요구도는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추후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영유아 상담 및 임상현장에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심리평가가 의뢰된 모와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본 연구는 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를 횡단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므로, 추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교사 및 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사전-사후 효과검증 하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후속연구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육교사, 영유아 및 부모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검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들은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 및 검증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시 대상자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상담 관련 응급영유아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기관 신설, 설치 및 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 인력을 양성하여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모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국 모 519명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선중, 김교헌, 이홍석, 이상규, 이민규 (2007). 한국판 아동용 외상 후 반응 척도 (K-CRTE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667-675.
- 권혜진 (2008).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소진: 정서적 부조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인간발달연구. 15(4), 93-113.
- 김세진, 김교헌 (2005). 아동의 외상경험에 대

- 한 자기노출이 분노 반응에 미치는 효과: 적대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47-65.
- 내외뉴스 (2015.3.17.).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 안전사고 제로 인증사업 전국실시.
- 노컷뉴스 (2015.3.2.). 경찰 법석편 아동학대 전수조사, 결과는 '초라'
- 뉴스에듀 (2015.3.26.). 학부모 93.7%, 어린이집 CCTV 설치 필요.
- 동아일보 (2013.6.12). 보채는 아이 18명 혼자 감당. "통제 안 돼 나도 모르게 학대"
- 동아일보 (2015.2.6.). 어린이집 바늘 학대 피해 아동 6명으로 늘어 "착한 바늘로 불려왔다."
- 베이비뉴스 (2013.11.25). 잔혹했던 1월, 아동학대 특례법 추진해야.
- 보건복지부 (2013.5.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 (2013.8.29).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폐쇄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새누리당안심보육정책토론회 (2015.2.11.). 안심보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 소비자경제신문 (2015.3.18.).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근본 해결 위해 나섰다.
- 신혜영, 이은혜 (2005).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05-121.
-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5.2.11.).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 연합뉴스 (2015.3.31.).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학부모들 '부글부글'.
- 이경숙, 박진아, 오은정 (2008). 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 성, 연령 및 학대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3), 1-19.
- 이경숙, 박진아, 최명희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27-252.
- 박진아, 이경숙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요구도에 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5(3), 27-54.
- 이무영, 박상희, 문수경 (2008). 보육교사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2), 277-294.
- 이희은, 김순호, 김현익, 우연희, 문수백 (2014). 보육교사의 부정적 훈육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직무스트레스, 공감, 직장내 지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127-151.
- 인천시청 (2015.3.11.). 인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적극 추진.
- 정명선 (2014).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147-166.
- 조선일보 (2015.1.30.). 핵펀치 보육교사 이어 수원 0 어린이집 핵 이빨 원장, "2세 남아 물어뜯어"
- 조용남 (2015). 어린이집 인증 및 평가체계 개선대책.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발표집.
- 프레시안 뉴스 (2015.2.24.). CCTV 때문에 울어

- 도 안아주지 못해요.
프레스리안 뉴스 (2015.3.11.). 돌 안된 아이 셋이
올면, 교사 1 명이 어떻게 하죠?
프레스리안 뉴스 (2015.3.19.). 자격 없는 대표가
36 개 운영. 어린이집이 치킨집?
프레스리안 뉴스 (2015.3.9.). 우리가 왜 괴물이
되었을까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감정노동의 직업
별 실태. KRIVET Issue Brief, 26.
한만중 (2015). 안정적 누리과정 운영과 유보
통합의 과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
한 제도개선 토론회 발표집.
한세영, 김영희, 김연화 (2007). 교사의 특성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0(2), 53-67.
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2).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열린유아
교육연구*, 17(1), 313-335.
Korfmacher, J. (2000). The Kempe Family Stress
Inventory: a review. *Child Abuse Neglect*, 24(1),
129-40.
MBC 시사매거진 2580. (2013.9.8.). 어린이집에
서 어떤 일이.
Nanni, V, Uher, R., & Danese, A. (2012).
Childhood maltreatment predicts unfavorable
course of illness and treatment outcome in
depression: a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9, 141-151.
Rich-Edwards, J. W., Spiegelman, D., Lividoti,
Hibert, E. N., Jun, H. J., Todd, T. J., &
Kawachi, I. (2010). Abus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s a predictor of type 2 diabetes
in adult wome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9, 529-536.
Saperia, J., Lakhanpaul, M., Kemp, A., & Glaser,
D. (2009). Guideline Development Group and
Technical Team. When to suspect child
maltreatment: summary of NICE guidance.
BMJ, 22, 339.
SBS 뉴스 (2015.1.13.). 인천 어린이집, 원생 머
리 강하게 내리쳐.. 'CCTV 영상' 화들짝.
SBS 뉴스 (2015.3.14.). 인천 어린이집 학대 후
두 달, 아이들은 지금.
Surtees, P. G., Wainwright, N. W., Pooley K. A.,
Luben, R. N., Khaw, K. T., Easton, D. F.,
& Dunning, A. M. (2011). Life stress,
emotional health, and mean telomere length
in the European Prospective Investigation into
Cancer (EPIC)-Norfolk population study.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66(11), 1152-116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08).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2).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1차원고접수 : 2015. 04. 03.

심사통과접수 : 2015. 08. 28.

최종원고접수 : 2015. 09. 03.

An investigation into mothers'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child abuse at day care centers and need for counseling

Kyung-Sook Lee

Hanshin University

Jin-Ah Park

Sewon Infant & Child Development Center

Yee-Jin Shi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hild abuse at day care centers and need for counseling among 519 mother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6 mothers (14.6%) had experience or suspicion of their children having been abused at day care centers and 92 mothers (17.7%) had experience or suspicion of other children having been abused at day care centers. The most frequently adopted response was to protest against abusing teachers or directors. The biggest reason of taking no actions was the probability of being harmed or disadvantaged when their children were abused and that the degree of abuse was not serious enough to intervene or evidence was not clear when other children were abused. Second, the biggest cause of child abuse by day care center teachers was job stress followed by characteristic problems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teachers. Third, in terms of follow-up measures, cancellation of teaching license was demanded most highly for abusing teachers while administration of in-depth psychological assessment for abus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Fourth, child abuse counseling was mostly done at the mental health department of hospitals in the format of professional psychological test and diagnosis, and 11 mothers (47.8%) responde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counseling was mediocre. Fifth, 470 mothers (90.6%) said they would use a counseling center specialized in child abuse by day care center teachers if such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They said such organization would help them decide on whether to report abuse of their children as well as prevent child abuse. They also responded the organization should be installed in the counseling center in the comprehensive child care support center. Sixth, 498 mothers (94.2%) said counselors specialized in development and psychology of young children were required to address child abuse by day care center teachers for play therapy for young children and counseling for parents and teachers. Qualification was at least college graduates who majored in psychology and child care with three to five years of field experience under appropriate licenses or certificates. Finally, they demanded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in day care centers to prevent and eliminate child abuse at day care centers. Implications and follow-up research were also provided and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Key words : Child Abuse, day care center teacher, preschooler, mother, counseling